◈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0호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7호(2009.2.19), 제2010-291호(2010.8.5), 제2013-204호(2013.7.4)호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고시된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동부청과시장 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 시행자	동부청과(주) 대표 이현	㈜청량리엠엔디 대표 임영록	

다. 사업추진계획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변경없음)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동부청과시장 정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호 일대	22,908.2	-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입점상인 보호대책(변경없음)

2.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이 공매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되었고,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함.

3. 조건사항

○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계획, 입점상인보호대책 및 상권활성화계획 등 시장정비사업관련 기존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을 승계하여 이행할 것

○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미해결 채권에 대한 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사업시행자는 판매시설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구청장과 협의 할 것

4.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5)와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427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5.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3호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2016. 6. 27)에서 승인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산개황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7,112,103,616,059원(전년도 이월금 598,325,165,059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15,599,957,587원이고

지출액은 25,521,635,057,714원이며

차인잔액은 3,193,964,899,87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3,193,964,899,873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4,383,988,489원

사고이월 207,379,103,353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31,192,523,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1,009,284,262원이다.